

특허기술 가치평가 이야기

“기술을 금액으로 평가한다는게 가능해?”

필자가 몸담고 있는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이다. 무형의 기술적 사상인 특허가 금액으로 환산되는 가치평가에 대해 일반 대중들은 생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평가를 하는 목적이나 방법, 평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가치평가에 대한 일반 개념, 이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경우, 그리고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인 기술 평가기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특허기술 가치평가란?

특허기술 가치평가의 기초적인 논리는, “대상 특허를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기술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술 적용 제품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합을 현시점에서 추정, 혹은 예측한 결과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다음, 해당기술 요소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출하여 최종 가치 평가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로 정의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기술의 적용 비중을 고려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는 화폐/금전적인 값 또는 범위로 그 결과가 도출되지만, 기술 등급 평가(A, B, C 등)의 형태로 결과를 나타내는 기술등급평가도 있다.

2. 특허기술 가치평가가 필요한 경우

1) 기술 이전

기술은 거래가 일반적이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격상 활성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특허권자가 자신의 기술을 판매하고자 할 때, 혹은 타인의 특허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구입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가 적합한 가격인지 기준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특허기술 가치평가는 기술판매자와

기술구매자 간의 협상을 위한 합리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판매자로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부르는 구매자에 대한 반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전략적 이용

2011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기업의 자산평가 원칙이 기존의 취득원가 중심이 아닌 공정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은 기존에는 취득원가(특허출원비용 등)로 회계처리되어 그 가치가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가 허다하였으나, 이를 공정한 가치로 평가하여 자산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게 되어(기업은 취득원가 또는 공정가치 중 선택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기업의 자산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계열사 간의 인수, 합병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받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현물출자

특허권자는 상법상(상법 제416조, 제422조) 현금 대신 현물을 주식회사에 출자하여 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다. 즉, 특허를 출자함으로써 현금을 출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어, 기술보유자에게는 사업화에 참여하는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우수하고 사업화에 적합한 특허 기술을 현물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술의 가치평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4) 소송

필자도 소송 과정에서 가치평가가 활용되는 경우를 실제 본 적이 있다. 제3자가 특허기술을 보증하여 대출받은 경우, 상황이 되지 않으면 특허가 재산권으로서 기능하게 되어 그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치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의 침해 소송, 기타 재산분쟁 소송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의 금액, 적절한 재산 분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5) 기타

기술자산의 기증, 처분, 상각을 세무계획을 위한 경우 혹은 기업 청산 시 자산평가, 채무상환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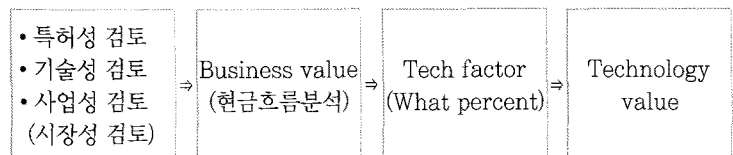
평가목적별 평가사례 현황

	구분	건수	비중(%)
평가목적	기술이전/거래용	232	22.6
	현물출자용	164	16.0
	투자유치용	80	7.8
	융자용	469	45.8
	소송용	4	0.4
	기타	76	7.4
	전체	1,025	100.0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기술평가결과의 활용실태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2010.1, Page 42

3. 특허기술 가치평가의 절차

기술가치평가 흐름



특허기술 가치평가는 3개 또는 4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 1) 특허 전문가, 통상 변리사에 의하여 특허의 권리강도, 경쟁 기술의 존부 및 권리의 안정성 및 타 권리에 따른 사업위험성이 분석된다. (특허성 검토)

2) 그리고 관련 기술의 전문가, 통상 교수 또는 박사 연구원에 의해 관련 기술의 동향, 해당 기술의 우수성 및 유효성이 분석된다. (기술성 검토)

3) 또한 시장 전문가가 기술제품의 상용화 단계 및 시장범위, 시장 규모 등을 분석한다. (시장성 검토)

4)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회계 전문가, 통상 회계사가 평가대상 기술의 수명 및 장래 기대 수익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사업성 검토)

각 분석 파트는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자유롭게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일정한 논리를 갖게 된다. 하기는 기술가치평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이익접근법의 방법론을 따를 때 기술가치평가 절차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인 기술가치 산정과정

구분	내용
제1단계 사전조사분석	- 사업계획서 입수 및 검토 - 기술, 기술제품, 제품시장의 이해 - 특허관리 현황조사 - 개략적인 산업동향, 유사 또는 경쟁기업 조사 - 기술현장 실사
제2단계 자료수집과 분석	- 특허의 권리범위, 법적 안정성, 사업관련성 등 권리성 분석 - 기술동향, 기술수준, 기술의 유용성 및 경쟁성, 기술수명 분석 등 기술성 분석 -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특성, 동종업계현황, 현재시장 및 잠재시장 분석, 시장규모, 제품수명, 매출추정 등 시장성 분석 - 동종산업 및 유사기업의 원가구조
제3단계 핵심변수 분석	- 매출추정, 수익기간 추정, 원가 및 자본지출추정, 할인율 추정
제4단계 기술가치 금액 산정	- 기술기여도 추정

* 자료 : 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기술가치평가, 2010.2

제3단계 핵심변수 분석과 제4단계 기술가치금액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내용
① 기술수명 추정	수익기간 추정
② 매출액 추정	기술수명을 고려하여 수익기간별 매출액 추정
③ 원가 및 투자 등 재무 분석	동업종내 유사기술제품의 매출원가율, 판매비와 관리비율, 감가상각액, 세율, 순운전자본, 자본지출액 등 분석과 파악대상기술제품의 생산 및 재무계획 등을 고려
④ 순현금흐름	경제적 이익흐름(income stream)을 현금흐름 또는 이익흐름으로 구분하고 일관성 있게 산출
⑤ 할인율 적용	경제적 이익을 자본화 또는 자산으로 환원하는 할인율 (WACC, CAPM, 경험적 방법 등)
⑥ 사업가치산출	기술이 사업화되어 그 경제적 이익을 사업가치로 계산한 금액
⑦ 기술기여도 적용	기술의 사업가치 중 기술이 공헌한 비율 (경제적 이익의 배분과정)
⑧ 기술가치 산정	기술가치 = 사업가치 × 기술기여도

* 자료 : 조경선(한국발명진흥회), 기술가치평가, 2010.2

4. 특허기술 가치평가의 일반적인 방법론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법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기법으로 이익접근법,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중, 이익접근법 중 할인현금흐름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DCF법)이 일반적으로 널리 쓰인다.

이익접근법은 새로운 기술무형자산권을 창출하거나 구축하는 비용과는 관계없이 그 자산이 지닌 경제적 이익 창출능력에 초점을 두는 산정방식이다. 즉 모든 자산의 내재가치는 그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생겨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데, 이익접근법은 이러한 내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이다.

이익접근법은 다음 세 가지 주요한 구성요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① 경제적 이익의 추정
- ② 예상 수익기간의 추정
- ③ 자본화율(할인율)의 추정

이익접근법의 이들 세 가지 구성요소는 많은 분석적 절차에 적용되어 있지만, 이익접근법을 적용하는 실무에서는 이론적인 개발과 개념적인 토대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음에 불구하고, 이익접근법은 무형자산의 가치와 경제적 분석방법으로(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5. 평가비용의 보조사업

한국발명진흥회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특허가치평가의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기술가치평가를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대학 및 기업은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 사업 안내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매년 초 평가비용의 70%까지 (5,000만 원 이내) 국고에서 보조하는 발명의 평가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도 본 사업은 5.26 :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매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평가비용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개인·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으로서, 심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 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이며

본 지원 사업은 ① 사업지원 신청·접수 ② 사업별 심사(1단계 기본 요건심사, 2단계 예비 선정심사(IP경영컨설팅 및 인터뷰), 3단계 최종 선정심사) ③ 각 사업별 세부 지원절차 진행 ④ 최종수혜자 선정 ⑤ 지원의 단계로 진행된다. (2010년도 사업 기준)

2010년도의 선정 기준을 하기 표로 나타내었다.

2010년도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사업 선정기준(한국발명진흥회)

1차 심의항목	세부 평가요소	2차 심의항목	세부 평가요소
특허기술 우위성 (30)	특허기술 차별성	신청자격요건 (예, 아니오)	신청자격의 충족여부
	특허권리강도		
특허기술 유용성 (30)	특허기술 완성도	기술권리요건 (예, 아니오)	신청기술의 신청요건 충족여부
	특허기술 제품활용도		
	특허기술 경쟁성		
시장과 산업동향 부합성(30)	시장 매력도 또는 성장성	신청서 허위 기재 여부 (예, 아니오)	신청서 기재내용과 구비서류의 부합여부
	산업동향 부합성 또는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경쟁력	구비서류완비 여부 (예, 아니오)	우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등 구비 서류 완비여부
활용계획 적절성(10)	활용계획 적절성	기타 (예, 아니오)	기타 결정사유 존재 여부

이 외에도 R&D 특허센터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의 여러 기관에서 특허기술가치평가 비용의 지원을 포함하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6. 기술평가 관련 규정 법률

국내의 기술평가제도는 크게 i)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기술활용 촉진 및 기술담보 또는 ii) 기술보증 등 정책자금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기술평가 정책은 관련 법률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술평가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 ① 기술이전 및 기술 사업화 등 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기술평가제도이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기 법률들은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상용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기술담보 또는 기술보증 등 정책자금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위한 기술평가제도이다.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촉진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률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우리나라 기술평가제도를 규정한 관련 법률을 요약한 것이다.

기술평가 관련법률 요약

법령	주무부처	평가목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이하)	지식경제부	- 기술이전 · 사업화 촉진 - 기술담보대출 촉진 - 기술현물출자
발명진흥법 (제28조 이하)	특허청	-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 촉진 목적 -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대상인 산업재산권 등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평가 - 벤처기업 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1항 5의 2)	금융위원회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 - 기술평가보증대출

7. 공인 기술평가기관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는 공인 기술평가 기관 및 민간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으나, 현물출자나 자산의 등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바로 출자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지정 기술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평가받는 것이 유리하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식경제부에 의하여 지정된 대표적인 기술평가 기관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모두 공공기관이다. 하기의 공공기관들을 비롯한 여러 사설 기관 및 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기술의 가치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평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발명진흥회	http://www.kipa.org
전자부품연구원	http://www.keti.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원	http://www.kisti.re.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www.khidi.or.kr
한국산업은행	http://www.kibo.co.kr
한국화학시험연구원	http://www.ktr.or.kr
기술보증기금	http://www.kibo.co.kr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sbc.or.kr
국방기술품질원	http://www.dtaq.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www.kiat.or.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http://www.etri.re.k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http://www.efact.or.kr

8. 특허기술 가치평가 이야기를 마치며

기술의 가치평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혹은 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의외로 많다)

특히,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관심은 높아졌으나,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용도에 맞게, 필요에 맞게 기술 가치평가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김 규 언

현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전문위원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학사
제45회 변리사 시험합격
전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재직